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      |
|----------|------|
| 의안<br>번호 | 2317 |
|----------|------|

제안년월일 : 2024년 12월 18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봉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148호)과 한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179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사유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수도시설이 손괴되었을 경우, 실제 발생한 공사비(직접공사비)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사고 복구를 위한 공사비 이외에 수도시설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간접복구비'를 추가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 또한, 수도물을 사용할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납부 주체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원인자부담금 원상복구비를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구분함(안 제2조, 안 제3조).
- 나.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 다. 수도시설 잔존가치 환산한 ‘간접복구비’ 적용한 산정기준 마련함(안 제4조).
- 라.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수도시설 자산 등을 반영함(안 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원상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을”를 “직접복구비 및 손괴 이전 수도시설에의 잔존가치를 환산한 간접복구비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급수자원 비용”이란 급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병물 지원에 드는 비용

제3조제1항제1호 중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든”을 “건설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취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 등 수도시설에 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 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을 “이외 시설에서”로, “부담시키는 경우”를 “기존 수도시설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설계도서”를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설계도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급수자원 비용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환산연면적 구간의”를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원상복구비”를 “직접복구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부담금의 간접복구비는 손괴 이전의 수도시설의 잔존가치 환산비용을 부과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times \text{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기타 추가 비용}$$

가.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에서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 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 시설, 취·정수시설, 송수 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로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매년 고시/공고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 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배수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단위사업비를 산정한다.
- 2) “총사업비”란 의회에서 결산 승인된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상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 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3) “시설용량”이란 서울특별시 정수용량의 총합계를 말한다.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산정기준》 |   |
|-------------------------|---|
| ①                       |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br>여기서, 총사업비는 총가동설비자산 중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
| ②                       |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br>여기서, 총사업비는 총가동설비자산 중 취수, 도수, 정수, 송수, 지역배수지를 포함한다.   |

나.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에서의 “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이란 부과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계산한 인원에 서울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목표연도(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 1) 1인 1일 최대 급수량 = 1인 1일 급수량 × 침투부하율

2) 1인 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타 추가 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사업지구 수도공급을 위하여 당해 수도시설 설치공사로 주변 급수환경 변화를 발생시켜 정상화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이며, GIS 측량비, 관세척(퇴수)비, 출동작업 경비, 단수 홍보비, 혼탁수 발생 처리비, 급수차의 사용경비 등 관련 처리에 필요한 소요 비용으로 산정한다.

라.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지구 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 부과되되,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추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준공 전 차액을 정산한다.

※ 물 사용량을 추정할 수 없을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가.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개발사업에서 “단위사업비”란 서울시 수도 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순자산”이란 서울특별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누계액 + 공사부담금 누계액 + 원인자부담금 누계액 + 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2)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나.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에서 “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이란 최근 3년 평균 업종별 구경별 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단 업종은 가정용과 비가정용으로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매년 고시/공고한다.
- 다. 부과 대상 사업의 시설용량, 단위사업비 공고 등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정의를 준용한다.
- 라.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은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하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5밀리미터를 적용한다. 다만, 물사용량을 고려하여 급수관의 구경을 결정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u>원상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u></p> <p>3. ~ 7.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u>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든 건설</u></p> | <p>제2조(정의) -----<br/>-----.</p> <p>1. (현행과 같음)</p> <p>2. -----<br/>-----<br/>-----<br/>----- <u>직접복구비 및 손괴 이전 수도시설에의 잔존가치를 환산한 간접복구비를</u> -----<br/>--.</p> <p>3. ~ 7. (현행과 같음)</p> <p>8. <u>“급수자원 비용”이란 급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병물 지원에 드는 비용</u></p> <p>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br/>-----<br/>-----.</p> <p>1. -----<br/>-----<br/>----- <u>건설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취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등 수</u></p> |



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2.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도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호나목, 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 10. (생략)

<신설>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3조 제1항에 따른 업종별 환산연면적 구간의 부담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도시설에 든 -----

2. -----  
-- 이외 시설에서 -----  
-----  
-----  
-----  
-----  
----- 기존  
수도시설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② -----  
-----  
-----  
-----  
-----.

1. -----직접복구비, 간접 복구비, 설계도서 -----

2. ~ 10. (현행과 같음)

11. 급수자원 비용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3조 제1항에 따른 -----  
-----.

② -----  
-----  
-----.

1. ----- 직접복구비 -----  
-----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구성에 따른다.

2. ~ 5. (생략)

6.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감리비와  
차량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직원경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른 여  
비로 한다.

7.·8. (생략)

<신설>

③·④ (생략)

-----  
-----  
-----.

2. ~ 5. (현행과 같음)

6. -----  
-----  
-----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다.

7.·8. (현행과 같음)

9. 부담금의 간접복구비는 손괴  
이전의 수도시설의 잔존가치  
환산비용을 부과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